

# 공증사무지침

법무부 법무과

## 1. 수시 특별감사의 기준

[2013. 9. 1. 제정]

제1-1조(목적) 이 지침은 정기감사 이외에 수시로 실시되는 특별감사 대상의 선정기준을 정하여 공증인 감사 및 징계 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수시 특별감사의 기준) 수시 특별감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인정되고, 그 혐의가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공증사무소에 대해 실시한다.

1.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매월 보고되는 공증업무처리현황, 해당 공증사무소의 공증인 및 보조자의 수, 공증사무소의 위치 등에 비추어 공증실적이 해당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법상의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
2. 신빙성 있는 제보가 접수되는 경우
3. 민원, 이의신청 등 이해관계자의 문제제기가 있는 경우
4. 기타 이에 준하여 수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 9. 1.부터 시행한다.

## 2. 징계 전(前) 인가취소 · 면직 신청 및 공증담당변호사 변경신고에 대한 처리 기준

[2013. 9. 1. 제정]

제2-1조(목적) 이 지침은 공증감사에 적발된 공증인 등이 징계처분 전에 인가취소 또는 면직을 신청하거나 공증담당변호사 지정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 그 처리기준을 정하여 공증인 징계 등 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기준) ① 정직 이하의 징계처분이 예상되는 임명공증인이 징계의결 요구 전에 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정직 이하의 징계처분이 예상되는 인가공증인이 징계의결 요구 전에 인가취소 신청을 하고, 그 공증담당변호사가 지정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인가취소 신청과 지정변경 신고를 수리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인가공증인이 인가취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그 공증담당변호사만 지정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제2-3조(자료의 보존) 제2조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를 수리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혐의에 대한 증거자료를 징계전력 자료와 함께 보존하여 임명공증인 임명 및 재임명, 인가공증인 인가 및 재인가, 공증담당변호사 지정 등의 업무에 참고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 9. 1.부터 시행한다.

### 3. 번역문 인증사무 지침

[2013. 10. 1. 제정]

제3-1조(목적) 이 지침은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공증인의 번역문 인증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2조(용어의 정의) ① ‘번역문’이라 함은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공문서를 포함한다)를 국어로 번역하거나(이하 국문 번역문이라 한다) 국어로 작성된 문서(공문서를 포함한다)를 외국어로 번역한 것(이하 외국어 번역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서약인’이라 함은 공증인의 면전에서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번역인’이라 함은 번역문을 직접 작성한 사람을 말한다.

제3-3조(서식) 영문번역문 이외의 번역문에 대해서도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를 적용한다.

제3-4조(서약서 작성 및 촉탁) 번역문 인증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공증인의 면전에서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없음을 서약한다는 취지의 서약서(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5호)를 작성하여 인증을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번역을 의뢰한 사람의 청구에 따라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였다는 취지, 번역의뢰인·번역인의 성명·주소·연락처 및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번역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확약서와 번역인이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번역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및 번역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 때에 한하여 촉탁할 수 있다.

1. 번역인. 제2호의 사람이 번역문을 직접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
2. 해당 번역문 인증서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려는 사람으로서 번역인에게 번역을 의뢰한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

제3-5조(번역인) ① 공증인은 자격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고 필요한 설명을 요구하여 번역인이 해당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능력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그 서류를 공증촉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해당 번역문 인증서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려는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번역문을 작성하여 번역문 인증을 촉탁 및 서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어에 대하여 번역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행정사법에 의한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2. 사단법인 한국번역가협회에서 시행한 번역능력인정시험(1급, 2급), 사단법인 국제통역번역협회가 시행한 국제통역번역시험(1급, 2급),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시행한 결혼이민자 통번역능력인증 시험(1급)을 통과한 사람이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해당 외국어를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이 학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4.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자가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대학에 유학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 그 학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5.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외국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자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 그 학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6. 번역문 인증 촉탁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다음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 공인어학성적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토플 (TOEFL)	미국의 교육평가원에서 시행하는 IBT 시험	쓰기시험 25점 이상
토익 (TOEIC)	미국의 교육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시험	쓰기시험 150점 이상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	쓰기시험 71점 이상
지텔프 (G-TELF)	미국의 국제테스트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시험	GWT 작문시험 3등급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	쓰기시험 200점 이상
메이트 (MATE)	숙명여자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	Mate Writing 시험 상급 이상

7. 기타 이에 준하는 학력,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추어 해당 외국어에 대하여 번역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해당 학력, 자격,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

### 는 경우

제3-6조(공증촉탁서의 기재 사항) ① 공증인은 공증촉탁서의 촉탁인란에 서약인의 인적사항(주소, 연락처, 직업 등을 포함한다)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서약인이 공증인을 면담하고 서약한 일시와 그 소요시간, 번역문 인증서의 용도(제출기관의 이름을 포함한다)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공증인은 제4조 제2호의 경우에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 제2항에 따라 공증촉탁서의 대리인등 기재란에 “번역인”이라고 표시한 뒤 그 인적사항(주소와 연락처, 직업 등을 포함한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7조(수수료) 외국어 번역문 인증의 수수료는 25,000원으로 한다. 국문 번역문 인증의 수수료 또한 이와 같다.

제3-8조(금지 사항) 공증인은 번역문 인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서약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직접 서약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번역문 인증서를 작성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촉탁인의 신분증 사본을 공증사무소에 비치하거나 그 신분증을 스캐닝한 파일을 공증사무소의 전자장치에 저장하는 행위
3. 공증인 또는 공증인 보조자가 촉탁인을 위하여 인증서 이외의 서류(위임장, 공증촉탁서 등과 부속서류를 말한다)를 대신 작성해 주는 행위
4. 촉탁인의 서명이 되어 있는 여러 장의 공증촉탁서 등 공증 서류를 미리 비치하는 행위

제3-9조(집단촉탁사건보고) 공증인은 매월 작성한 번역문 인증서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인증서에 대하여 아래 양식에 따라 번역인의 성명 · 주소 · 직업(소속 회사) · 연락처, 총 건수, 등부번호, 수수료 총액을 다음달 15일까지 팩스, 이메일, 우편, 공문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번역인이 동일할 것
2.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50건 이상일 것. 합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사무소 전체 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 매월 50건 이상 집단촉탁사건 현황(양식, 예시포함) )

(2013. ○. 기준)

순번	번역인	건수	등부번호	수수료 총액	미수금
1	甲	120건	2013-45 ~ 164		

※ 번역인 甲의 주소, 직업(회사), 연락처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 10. 1.부터 시행한다.

## [번역문 인증사무 지침 해설]

[2013. 10. 1. 배포]

## ① 공통사항

1.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 제1항은 번역문 인증의 경우 원칙적으로 번역인이 공증인 앞에서 서약함을 전제로 한다.  
▷ 별지 제45호 서식은 “번역문과 원문이 상위 없음을 서약” 하므로, 번역문과 원문의 내용을 잘 아는 자만이 서약을 할 수 있다.
  
2.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 제2항은 번역인이 아닌자의 서약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제33조 제1항, 별지 제45호 서식과의 관계 및 서약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지침 제4조 제2호는 “해당 번역문 인증서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려는 사람으로서 번역인에게 번역을 의뢰한 사람 또는 그 법정 대리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번역문 인증은, 지침 제4조에 규정된 사람만 촉탁할 수 있다. 즉 번역문 인증은 임의 대리인에 의한 대리촉탁이 허용되지 않는다.
  
4. 공증인에 대한 번역자의 번역능력 소명 정도는 한국어와 해당 외국어에 능통한다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이다.
  - ▷ 따라서 지침 제5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번역에 관한 자격증이므로 해당 서류 하나만을 제출 받으면 번역능력에 관한 사실은 소명된다.
  - ▷ 그러나 지침 제5조 제2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한국어 능력에 관한 부분과 외국어 능력에 관한 부분에 해당하는 두 가지 서류를 제출받아 번역능력에 대한 소명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5. 번역자의 번역능력의 최종적인 판단자는 공증인이다. 따라서 공증인은 적절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 받아 지침 제5조 제2항 제7호 해당 사항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6. 이 지침에 의하여 번역능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행정사법위반(행정기관에 제출 되는 각종 서류를 외국어번역행정사 아닌 자가 번역하는 경우)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이 지침의 번역능력 인정 여부와 행정사법위반의 책임여부는 전혀 별개이다.

## ② 지침 제4조 본문 · 단서 적용례

1. 지침 제4조 제2호에 따라 번역인이 아닌 자(=의뢰인 또는 그 법정 대리인)가 번역문 인증을 촉탁하고 공증인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경우, 공증인은 동조 본문 단서에 의해 번역인이 작성한 확약서, 번역인의 번역능력 증명자료, 번역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아야 한다.
  
2. 번역인이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무료 또는 유료로 번역을 해준 경우에도 위

지침 제4조 본문 단서가 적용된다. 따라서 법인 또는 단체 명의가 아닌 실제 번역에 관여한 사람 명의의 확약서, 신분증 사본 및 그에 대한 번역능력 증명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3. 행정기관에 소속된 번역인이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그 직무에 따라 무료로 번역을 해준 경우에도 위 지침 제4조 본문 단서가 적용된다. 따라서 행정기관 명의가 아닌 실제 번역에 관여한 사람 명의의 확약서, 신분증 사본 및 그에 대한 번역능력 증명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 다만, ① 번역을 의뢰한 사람의 청구에 따라 번역료를 받지 아니하고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였다는 취지와 ② 행정기관 이름, 연락처 및 번역문 작성 일자가 기재되고 그 행정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 또는 공문이 제출된 경우에는 위 확약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지 않을 수 있다. 이때에도 번역능력 증명자료는 제출받아야 한다.

### ③ 지침 제5조 제2항 제1~6호에 관한 적용례

1. 제1호의 외국어 번역 행정사의 경우, 해당 언어별로 번역능력을 판단한다.
2. 제2호의 각종 번역 · 통역 자격증의 경우, 해당 언어별로 번역능력을 판단한다.
3. 제3호는 우리나라에 해당 언어와 관련하여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자로, 예를 들어 영어의 경우, 영어과, 영어영문학과, 영어교육과 등 관련학과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기계공학과에서 영어로 수업을 했다는 사정은 해당 외국어를 전공한 경우가 아니다.

▷ 다만, 공증인은 번역인이 한국인이 아니거나 한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번역인의 한국어 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제4호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에 유학하여 대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외국 대학의 학과는 불문 한다.

**5. 제5호는 예를 들어,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우리나라에서 대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우리나라 대학의 학과는 불문 한다.**

▷ 다만, 공증인은 번역인이 한국인이 아니거나 한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번역인의 한국어 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6. 제6호는 우리나라 국민이 서약하는 경우 한국어 능력은 당연히 있다고 전제하고 해당 서류만으로 소명하므로, 만약 외국인 또는 한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자가 촉탁하는 경우 한국어 능력에 대한 소명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 ④ 지침 제5조 제2항 제7호에 관한 적용례

##### 1. 적용 원칙

▷ 번역인의 번역능력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공증인은 제7호를 적용 함에 있어 신중하여야 한다.

▷ 따라서 공증인은 제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번역인이 있을 경우 그 번역 인에게 제1호 ~ 제6호에 준하는 번역능력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여야 하고, 만약 그 번역능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면 번역문 인증 촉탁을 거절 하여야 한다.

##### 2. “1호, 2호, 6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경우”의 의미

▷ 해당 외국어에 대한 시험으로서 1호, 2호, 6호에 적시되지 않은 시험을 통과하고 그 자격 또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위 증명서를 공증 촉탁서에 첨부).

- ▷ 이때 공증인은 그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험의 검정수준을 확인하고, 그 확인자료를 공증촉탁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 ▷ 공증인이 그 시험의 검정수준을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번역능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면 번역문 인증 촉탁을 거절하여야 한다.

#### 3. “3호, 4호, 5호에 준하는 학력을 갖춘 경우”의 의미

- ▷ 예를 들어, 미국 국적의 번역인이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각종 한국어 검정시험에 합격하여 그 어학성적표를 제출하는 경우 제5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제7호에 의해 번역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 공증인은 번역인을 면담함에 있어 한국어 능력을 명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 ▷ 공증인이 번역인의 번역능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면 번역문 인증 촉탁을 거절하여야 한다.

#### 4.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갖춘 경우”의 의미

- ▷ 제1호 ~ 제6호의 자격, 학력, 성적증명이 없더라도 이에 준하는 번역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를 의미한다.
- ▷ 예를 들어, 제1호 ~ 제6호의 자격, 학력, 성적증명이 없으나 10년 동안 영문 번역업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번역인증을 촉탁하는 경우 공증인은 그 기간 동안의 사업자등록증 외에 번역실적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 번역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번역업으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증만 제출된 경우에는 번역능력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 ▷ 공증인은 제1호 ~ 제6호에 준하는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제출받아야 하고, 본인의 책임 하에 번역인의 번역능력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공증촉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참고사항

- ▷ 결국 번역인의 번역능력을 확인하는 최종적인 책임자는 공증인이다.
- ▷ 두 개의 언어(한국어, 해당 외국어)에 능통하여 해당 서류를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공증인에게 소명된다면, 공증인의 책임 하에 번역문 인증사무 처리가 가능하다.

## [번역문 인증사무 지침 해설 2차]

[2013. 10. 17. 배포]

### ① 공증촉탁서의 기재

1. 공증인 또는 공증인 보조자가 촉탁인을 위하여 ‘공증촉탁서 등과 부속서류’의 모든 사항을 대필하는 것은 금지된다(지침 8조 3호). 다만, 지침 제6조에 따라, 공증인 또는 공증인 보조자가 공증촉탁서의 촉탁인란과 비고란을 작성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2. 공증인 또는 공증인 보조자가 지침 6조에 따라 촉탁서 비고란을 작성하는 경우, 비고란에는 서약인이 공증인을 면담하고 서약한 일시와 그 소요시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 ▷ 지침 제6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은 공증촉탁서의 ‘촉탁인’과 ‘대리인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는 취지이지 공증인 또는 공증인 보조자가 촉탁인을 대신하여 기재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 ▷ 다만, 공증인 면담 일시 등은 지침 제6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증인 또는 공증인 보조자가 공증촉탁서의 비고란에 직접 기재해야 한다.
  - ▷ 즉 원칙적으로 공증촉탁서의 촉탁인란은 촉탁인(서약인)이, 비고란은 공증인 또는 공증인 보조자가 기재해야 한다. 비고란은 자필기재가 아닌 컴퓨터를 사용하여 기재해도 무방하고, 별지를 사용할 수도 있다.

## ② 번역인 및 번역의뢰인의 범위

1. 지침 제2조 3항의 번역인은 번역문을 실제 번역한 사람(자연인)을 말하므로 그 자연인이 소속된 법인, 단체, 회사, 공공기관 등은 번역인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법인, 단체, 회사, 공공기관 등은 번역인으로 취급될 수 없고, 서약능력도 인정될 수 없다.
2. 지침 제4조 2호의 ‘번역의뢰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번역문 인증서를 국내 또는 국외의 행정기관이나 단체 등에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같이 원문에 번역의뢰인의 이름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번역의뢰인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원문에 그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공증인은 그가 지침 제4조 2호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확인하여야 한다.
  - ▷ 다만, 법인, 단체, 기관의 임직원이 법인, 단체, 기관의 직무와 관련해서 번역인에게 직접 번역을 의뢰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법인등기부등본이나 법인이 작성한 재직증명서(법인 인감이 날인되고 법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말한다) 등에 의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그 임직원 또한 지침 제4조 2호의 ‘번역의뢰인’으로 취급할 수 있다.

※ 법인 등의 임직원이 ‘번역의뢰인’이 아닌 지침 제4조 제1호의 ‘번역능력 있는 번역인’의 자격으로 공증사무소에 출석하는 것과는 구별해야 한다.

## ③ 공증인이 번역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

1. 공증인법 제21조 제3호는 ‘공증인이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 함은 ‘촉탁인과 공증인 사이에 고용, 위임 등의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공증인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 예를 들어, 공증사무소의 내부 직원 또는 공증사무소에서 고용한 사람이 번역문을 작성하고, 그 사람이 해당 번역문 인증의 번역인이 되는 경우 해당 공증

인은 위 제척규정에 위반된다.

2. 공증인이 공증사무소를 방문한 번역의뢰인(번역문 인증 촉탁인)의 편의를 위해 주변에 있는 번역인 사무소를 단순히 안내하거나 그 소재지를 알려주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척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3. 단순한 안내를 넘어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증인과 번역인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척규정 위반이다. 의뢰인이 번역수수료를 공증사무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번역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역시 제척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 ▷ 공증인 또는 공증인 보조자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번역인에게 직접 번역을 의뢰한 후 그 번역인을 서약인으로 하여 번역문 인증을 하는 경우
  - ▷ 공증인 또는 공증인 보조자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번역인에게 직접 번역을 의뢰한 후 그 번역인으로부터 번역인 확약서, 번역능력 증명자료, 번역인 신분증 사본을 제공받은 다음, 번역의뢰인을 촉탁인(서약인)으로 하여 번역문 인증을 하는 경우

#### 4.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

[2013. 10. 1. 제정]

제4-1조(목적) 이 지침은 공증인(공증인법 제8조에 의해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나 등기소장을 포함한다)의 집행증서 작성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집행증서 작성 과정에서 집행채무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2조(용어의 정의)

1. ‘집행증서’ 라 함은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공증인법 제56조의2 (어음 등 공정증서), 제56조의3(부동산 인도 등 공정증서, 2013. 11. 29. 시행),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대체물 지급 등 공정증서)에 의해 집행권원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대부업자 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여신금융기관. 해당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여신전문금융업자. 해당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 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 라.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 마.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해당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상호저축은행이 해당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 아. ‘새마을금고법’ 제2조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중앙회. 새마을금고가 해당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 자.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중앙회. 신용협동조합이 해당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차. ‘보험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해당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카. ‘우체국 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예금, 보험을 취급하는 체신관서

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채권추심자

파. 위 가.목 ~ 타.목에 규정된 자로부터 업으로 채권을 양수한 자

하. 위 가.목 ~ 파.목에 규정된 자 이외에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금전대부계약(이자 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따라 발생한 채권 · 채무에 관하여 집행증서 작성 을 반복적으로 촉탁하는 자

제4-3조(집행수락의사의 표시) 집행증서 상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채무자의 의사는 채 무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공증인의 면전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제4-4조(촉탁거절사유) 공증인은 대부업자 등의 금전대부계약(소비 대차계약, 대출계약, 어음할인계약, 준소비대차계약 등 명칭을 불문하고 금전의 교부 및 이에 따른 원리금의 상환을 약정하는 계약과 그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무의 변제계약을 포함한다)에 따른 채권 · 채무에 관한 집행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가 위 계약 및 집행수락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대부업자 등의 상대방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집 행증서 작성 촉탁을 거절하여야 한다.

1. 대부업자 등

2. 대부업자 등의 직원 또는 대출모집인(대가를 약정하고 위 계약의 성립을 앞선 또는 중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이 대부업자 등의 상대방의 대리인 선임에 관하여 추천 기타 이와 유사한 관여를 한 경우 그 대리인

4. 자격없이 수수료를 받고 업으로 집행증서 작성의 촉탁을 대리하는 사람

제4-5조(공증인의 확인 의무) 공증인은 제4조의 사유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뜻을 말하고 필요한 설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6조(금지 사항) 공증인은 집행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증인법 제38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집행증서를 작성하는 행위(동법

제27조에 따라 촉탁인 또는 촉탁대리인의 신분만 확인하고 집행증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촉탁인에게 공정증서 정본을 먼저 작성하여 교부한 후 공정증서 원본을 별도로 작성하는 행위
3. 촉탁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의 원본을 촉탁인 또는 촉탁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환부한 것처럼 원본환부서를 작성하여 집행증서 원본에 첨부한 후 위 원본을 계속 공증사무소에 비치하는 행위
4. 제1호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증서를 작성하거나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공증 촉탁인 또는 촉탁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공증사무소에 비치하거나 그 신분증을 스캐닝 한 파일을 공증사무소의 전자장치에 저장하는 행위
5. 공증인 또는 공증인 보조자가 촉탁인 또는 촉탁대리인을 위하여 집행증서 이외의 서류(위임장, 공증촉탁서 등과 부속서류를 말한다)를 대신 작성해 주는 행위
6. 촉탁인 또는 촉탁대리인의 서명이 되어 있는 여러 장의 공증촉탁서 등 공증 서류를 미리 비치하는 행위

제4-7조(공증촉탁서의 기재사항) ① 공증인은 공증촉탁서에 촉탁인 및 촉탁대리인의 성명, 주소, 직업(회사), 연락처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공증인은 공증촉탁서의 비고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증인이 촉탁인 또는 촉탁대리인을 면담하고, 공증인법 제38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 일시 및 그 소요시간
2. 촉탁대리인과 촉탁인의 관계. 이 경우 촉탁대리인이 촉탁인을 대리하게 된 경위를 알 수 있도록 간략히 기재한다.

제4-8조(집단촉탁사건보고) 공증인은 매월 작성한 집행증서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행증서에 대하여 아래 양식에 따라 촉탁인 및 그 대리인의 성명 · 주소 · 직업(소속 회사) · 연락처, 총 건수, 증서번호, 수수료 총액을 다음달 15일까지 팩스, 이메일, 우편, 공문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동일 촉탁인의 촉탁으로 작성되었을 것. 촉탁인이 동일하고 그 대리인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2.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50건 이상일 것. 합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사무소 전체 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 〔 매월 50건 이상 집단촉탁사건 현황(양식, 예시포함) 〕

(2013. ○. 기준)

순번	촉탁인	대리인	대리인	증서번호	수수료 총액	미수금
1	甲	A	120건	2013-45 ~ 164		
		B	200건	2013-165 ~ 364		

※ 촉탁인 甲의 주소, 직업(소속 회사), 연락처 :

※ 대리인 A의 주소, 직업(소속 회사), 연락처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 10. 1.부터 시행한다.

##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 해설]

[2013. 10. 1. 배포]

1. 지침 제2조 제2호 가목부터 파목까지에 해당되는 자가 지침 제4조 소정의 금전대부 계약을 하면, 이자 여부를 불문하고 지침 제4조가 적용된다.

▷ 예를 들어, A대부업자가 무이자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지침 제4조가 적용된다.

2. 지침 제2조 제2호 하목에 해당되는 자(=가목부터 파목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무이자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집행증서 지침 제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변제기를 도과하기 전에는 이자가 없고, 변제기를 도과한 이후에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때에는 무이자부 계약으로 본다.

▷ 예를 들어, 주류회사가 자신들이 납품하는 업체들에게 이자 없이(지연손해금은 있음) 금전을 대부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위와 같은

대부계약은 지침 제2조 제2호 하목 소정의 이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침 제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지침 제2조 제2호 가목 내지 하목에 해당하는 자가 촉탁하는 약속어음공정증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침 제4조의 적용대상이 된다. 다만, 촉탁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이 대부계약이 아니라는 증빙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침 제4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예를 들어, A대부업자와 채무자간에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일단 이는 대부계약에 기한 것으로 추정되어 지침 제4조가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그 약속어음이 대부계약이 아닌 매매계약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 공증인에게 소명되면 지침 제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이 때 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는 촉탁서 뒤에 첨부).

**4. 지침 제4조의 금전대부계약에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리스계약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 예를 들어, A대부업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와 매매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지침 4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예를 들어, 자동차리스계약 상의 채무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자동차리스계약서를 공증인에게 제출하면 지침 4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5. 주의사항

- ▷ 당사자들의 실제 계약이 매매계약이라면 실제 계약내용에 맞게 매매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은 위법하다.
- ▷ 당사자들이 원채무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계약(= 원채무가 무엇인지를 불문하고, 돈을 빌린 것으로 하자는 합의)을 하였다면, 원채무는 소멸하고 신채무만이 존재하게 되므로 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원채무가 대부계약이 아니라는 것이 공증인에게 소명된다면, 지침 제4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 예를 들어, A와 B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매매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은 위법하다. 공증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공증을 거절하여야 한다.
- ▷ 예를 들어, A대부업자와 B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대금에 대하여 돈을 빌린 것으로 하자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공정증서가 아닌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 경우 매매계약서 등의 제출로 공증인에게 원채무가 대부계약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되면, 지침 제4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이 경우 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는 촉탁서 뒤에 첨부).
- ▷ 다만, 공증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매매계약을 가장한 대부계약은 아닌지 확인해야 하며, 만약 가장사실을 알고도 공증을 해주면 징계 사유가 된다.

#### **6. 채무자가 채권자를 대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 ▷ 예를 들어, A대부업자가 채무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가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A대부업자를 대리(= 즉, 집행증서 작성 촉탁 대리)하는 경우에는 지침 4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7. 집행증서 지침 제6조의 금지사항은 촉탁인이 대부업자 등인지, 계약의 종류가 대부계약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집행증서에 적용된다.**

#### **8. 집행증서 지침 제7조의 촉탁서 기재사항은 촉탁인이 대부업자 등인지, 계약의 종류가 대부계약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집행증서에 적용된다.**

#### **9. 집행증서 지침 제8조 집단촉탁사건보고는 촉탁인이 대부업자 등인지, 계약의 종류가 대부계약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집행증서에 적용된다.**

- ▷ 예를 들어, A자동차회사가 매매계약공정증서를 1개월 동안 50건 이상 촉탁한 경우
  - 지침 4조의 적용대상은 아니므로 속칭 쌍방대리는 가능하지만,
  - 지침 제6조, 제7조, 제8조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금지사항, 촉탁서, 기재사항, 보고 등에 관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 5. 징계전력자의 공증인 임명 등 제한 기준

[2013. 10. 1. 제정]

제5-1조(목적) 이 지침은 공증인법 상 징계처분을 받은자의 임명 등 제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증인 임명 등 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2조(임명의 제한) 공증인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때에도 다음 각호의 사유 등으로 인해 임명공증인으로서의 적절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명공증인으로 임명하지 아니한다.

1. 임기만료 등으로 임명공증인, 공증담당변호사의 신분을 상실하기 직전 5년 동안 공증인법에 의하여 과태료 2회 이상 또는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신분을 상실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공증인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면직 또는 공증담당변호사 지정취소 등으로 임명공증인, 공증담당변호사의 신분을 상실하여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그 신분을 상실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5-3조(인가의 제한) 공증인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때에도 다음 각호의 사유 등으로 인해 인가공증인으로서의 적절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공증인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증인가의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가공증인의 신분을 상실하기 직전 5년 동안 공증인법에 의하여 과태료 2회 이상 또는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신분을 상실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공증인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인가취소 등으로 인가공증인의 신분을 상실하여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그 신분을 상실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5-4조(공증담당변호사 지정신고 수리의 제한) 공증인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때에도 제2조 각호의 사유 등으로 인해 공증담당변호사로서의 적절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공증담당변호사 지정신고(공증인가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인가 신청과 함께 접수되는 지정신고를 포함한다)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5-5조(재임명의 제한) 다음 각호의 사유 등으로 인해 임명공증인으로서의 적절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명공증인으로 재임명하지 아니한다.

1. 임기 만료 직전 5년 동안 공증인법에 의하여 과태료 2회 이상 또는 정직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는 등 직무수행의 태도, 방식, 결과 등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2.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5-6조(재인가의 제한) 제5조 각호의 사유 등으로 인해 인가공증인으로서의 적절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인가공증인에 대해서는 재인가를 하지 아니한다.

제5-7조(소명의 기회 부여) 제2조 내지 제6조의 경우에 신청자 또는 신고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 10. 1.부터 시행한다.

## 6.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변동에 관한 처리 기준

[2012. 3. 2. 제정]

제6-1조(목적) 이 기준은 구 변호사법(법률 제7357호, 2005. 7. 28. 시행)으로 폐지된 후 동법 부칙 제6조(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해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변동에 관한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2조(구성원) ①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는 대법원 소재지에서는 5인 이상의 변호사로, 고등법원·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소재지에서는 3인 이상의 변호사로 각각 구성한다.

②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 변호사 중 2인 이상은 공증인법 제15조의4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증인법(법률 제9416호, 2010. 2. 7. 시행) 부칙 제3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해 공증담당변호사로 보는 경우에는 동법 제15조의4 제1항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의 요건을 미달한 경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1인만 남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이 공증인법에 의한 정년에 도달하여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 지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3조(구성원 신규가입) ①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는 구 변호사법(법률 제7357호, 2005. 7. 28. 시행) 시행 당시의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신규가입 신고서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새로운 구성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으로 새로 가입하고자 하는 변호사는 공증인법 제15조의4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6-4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 3. 2.부터 시행한다.

제6-5조(종전 처리기준 폐지) 이 기준 시행 이전의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등 구성원가입 인가기준』(2005. 7. 27.자)은 폐지한다.

## 7. 공증수수료 등 산정의 기준

[2014. 1. 28. 제정]

### 제1장 총 칙

제7-1조(목적) 이 지침은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공증인 수수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수수료, 일당, 여비 및 실비(이하 ‘수수료 등’이라 한다)의 산정 기준을 정하여 수수료 등 산정 사무의 명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2조(수수료 등 임의 할인 금지) 공증인은 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직무상 명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 등을 임의로 감액할 수 없다.

제7-3조(계산서와 증빙서류) ① 공증인은 법 제80조에 따라 서류 등을 검열하는 법무부 소속 직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규칙 제36조에 따른 계산서와 그 증빙서류(수수료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거래내역, 신용카드 거래내역, 현금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말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에는 해당 공증서류의 번호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2장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

제7-4조(용어의 정의) ① 규칙 제2조의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라 함은 당사자의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하는 사법(私法)상의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등에 관한 공정증서를 말한다.

② 규칙 제15조의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에 관한 증서’라 함은 의사표시 이외의 법률 사실(준법률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공정증서를 말한다.

제7-5조(공정증서 정본 · 등본) 공정증서 원본을 작성하면서 정본 · 등본을 함께 작성하는 경우(법 제56조의2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한다) 원본 외에 그 정본 · 등본의 수수료를 별도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7-6조(집행증서)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수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7조(법률행위 목적의 가액)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은 증서 작성을 촉탁한 당사자 각각의 급부의 가액을 합산한 액에 의한다.

제7-8조(매매계약 공정증서) 매매계약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매수인의 급부 가액은 그 대금액으로 한다. 매도인의 급부 가액은 매매목적물의 가액에 의하되, 이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급부 가액에 의한다.

제7-9조(교환계약 공정증서) 교환계약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은 쌍방이 각각 이전하는 재산권의 가액을 합산한 액에 의한다.

제7-10조(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①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대주의 급부 가액은 대주가 차주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의 가액으로 하고, 차주의 급부 가액은 차주가 대주에게 반환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자를 제외한다)의 가액으로 한다. 대주가 공정증서 작성 당시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이미 이전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소비대차계약과 이에 수반되는 담보물권 · 용익물권 설정 약정에 관하여 하나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담보물권 · 용익물권 목적물의 가액은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소비대차계약과 이에 수반되는 연대보증계약에 관하여 하나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연대보증 가액은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7-11조(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① 민법 제605조의 준소비대차 계약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채무자의 급부 가액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자를 제외한다)의 가액으로 한다. 채권자의 급부 가액 또한 이와 같다.

② 준소비대차계약과 이에 수반되는 담보물권 · 용익물권 설정 약정에 관하여 하나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담보물권 · 용익물권 목적물의 가액은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준소비대차계약과 이에 수반되는 연대보증계약에 관하여 하나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연대보증 가액은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7-12조(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① 변제되지 아니한 잔존 채무의 변제약정에 관하

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채무자의 급부 가액은 그 잔존 채무(이자를 제외한다)의 가액으로 한다. 채권자의 급부 가액 또한 이와 같다.

② 채무변제계약과 이에 수반되는 담보물권 · 용익물권 설정 약정에 관하여 하나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담보물권 · 용익물권 목적물의 가액은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채무변제계약과 이에 수반되는 연대보증계약에 관하여 하나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연대보증 가액은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7-13조(사용대차계약 공정증서) 사용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대주의 급부 가액은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로 한다. 차주의 급부 가액 또한 이와 같다.

제7-14조(임대차계약 공정증서) ① 임대차 계약(임차권 설정등기가 수반되는 계약과 채권적 전세계약을 포함한다)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임대인의 급부 가액은 다음 각호 금액의 합산액에 의한다.

가.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

나. 보증금액(임대차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할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임차인의 급부 가액은 다음 각호 금액의 합산액에 의한다.

가.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

나. 보증금액(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임대기간 동안 임차인이 지급하는 차임의 총액. 다만, 규칙 제10조에 따라 동산 임대차는 月 차임의 1년분, 부동산임대차는 月 차임의 5년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제2항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제3장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

제7-15조(사서증서 등본 인증) ① 국어로 작성된 사서증서 등본에 대한 인증의 수수료는 1건 당 12,500원으로 한다.

② 외국어로 작성된 사서증서 등본에 대한 인증의 수수료는 1건 당 25,000원으로 한다.

제7-16조(번역문 인증) 외국어 번역문 인증의 수수료는 25,000원으로 한다. 국문 번역문 인증의 수수료 또한 이와 같다.

제7-17조(수통의 동일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동일한 내용의 사서증서 원본 수통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 각 원본마다 별개의 등부번호를 부여하여야 하고, 그 수수료는 각 등부번호마다 별도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7-18조(수통의 사서증서 등본에 대한 인증) 동일한 원본에 대한 수통의 사서증서 등본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 각 등본마다 별개의 등부번호를 부여하여야 하고, 그 수수료는 각 등부번호마다 별도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7-19조(1통의 계약서에 대한 인증) ① 수인의 당사자의 촉탁으로 1통의 계약서 원본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가. 계약서 원본을 인증하고 그 인증서를 당사자 중 1인에게 교부한다.

나. 나머지 당사자의 수만큼 등본을 작성하고, 각 등본마다 별개의 등부번호를 부여하여 사서증서 등본 인증을 한다. 다만, 나머지 당사자가 사서증서 등본 인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가.호의 인증서에 대한 사본만 원할 경우에는 사서증서 등본 인증을 하지 아니하고 가.호의 인증서를 전자복사한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수수료는 각 등부번호마다 별도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나.호 단서의 인증서 사본의 수수료는 제20조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7-20조(인증서 사본)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공증인이 보관 중인 인증서 사본을 전자복사하여 교부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1장당 500원으로 한다.

제7-21조(정관 인증) 규칙 제21조 제1항의 발행주식이 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